

□ 개정 내용

- 도시·군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재산적 손실(재산권 제한)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감면(지특법§84②)과 동일하게 미집행 규정 신설
 - 국토계획법의 도시·군계획시설에 관한 사업은 실시계획의 인가(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포함) 전까지만 비과세 적용
 -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(도시정비법§20①)을 참고하여 조합 설립인가 후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제외
- 개별법률(예: 도시개발법, 공공주택특별법 등)에 의해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의제된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

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5조(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)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